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. 7. 18 선고 2024가단309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, 한세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호

변 론 종 결 2024. 6. 27.

판 결 선 고 2024. 7. 18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4. 1. 1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24. 1. 18. 접수 제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D의 채권자이고, 피고는 D의 모친이다.

나. 피보전채권의 존재

D가 2022. 8. 24.경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위 자동차 보험자로서 대인배상을 한 원고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음주운전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,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59525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3. 12. 14. 위 법원으로부터 “D는 원고에게 1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24. 1. 5. 확정되었다.

다. D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

D는 2014. 5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별지 목록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24. 1. 16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달 18.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D의 채무초과

D는 다액의 금융채무 및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등을 비롯한 소극재산이 자동차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9호증(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】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면,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고 D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D의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나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맺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는바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인데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등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며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,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소유명의자인 D의 책임재산이라 할 것이다(더욱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는 이미 상환여력을 초과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위 사고로 2023. 9. 21.경 구속된 후 원고에 대한 구상금판결이 확정되자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모친에게 증여하였는바, 이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곤란하게 할 동기와 이해관계도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)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정원석

별지